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5호

부산광역시의회 개방형직위(사무처장)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방형직위(사무처장)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법률, 2026.10.22.)

ㅇ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5.12.30.)

ㅇ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26.9.21.)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26.6.30.)

2. 임용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직위	임용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업무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지방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 시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자치분권 실현·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 청렴의회 구현 및 의정활동 홍보 등 의회 이미지 제고 ·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3. 임용신분

ㅇ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전입 등을 통해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ㅇ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유지

4. 임용(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공직선거법, 병역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주소지 · 성별 · 연령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격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 지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사람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경력 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 간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사람으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관련분야 경력범위 :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법, 정치, 지방자치, 지방의회, 국회 관련 근무(연구)경력

* (국가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26. 1. 29. 재정경제부 지정, 342개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주40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주20시간 근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경력직공무원 :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일반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 2호)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임용예정직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개방형 2호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	90,277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6.11.9.(월) ~11.20.(금)	’26.11.23.(월) ~11.27.(금)	형식요건 심사	’26.12.2.(수) ~ 12.4.(금)	시의회 사무처	’26.12.7.(월)
		적격성 심사	’2612.14.(월) ~ 12.18.(금)	시의회 사무처	’26.12월중

나. 시험방법

○ 심사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하고, 시험방식은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심사 후 적격성심사를 실시함

① 형식요건심사(서류)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고, 합격·불합격만 결정하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함

- 직무수행요건상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
-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

② 적격성심사(서류+면접)

○ 형식요건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

*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6. 11. 23.(월) ~ 11. 27.(금), 9:00~18:00(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시의회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메일,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 임기제 채용담당자 (☎051-888-8334)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를 함께 우송(미 동봉시, 접수불가)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 **원서접수기간 이전 소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유의사항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발송 기준)**

ㅇ 시험시행기관은 접수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보완기한은 접수(우편도착) 익일까지로 한정하며, 접수기간 경과 후 신규 서류제출 불가

ㅇ 응시번호와 면접순서는 별개로 부여할 예정임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만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증명서** 제출
 *상기 내용 중 미성년 자녀는 2007. 11. 24. 이후 출생 자녀가 해당(원서접수일 기준)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근무경력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강사,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으로 발급
-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할 경우 경력 인정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기재 경력은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증명사진 1매 : 3.5×4.5cm(최근 6개월 이내)

⑫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②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③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사본)(**총 5점 이내**)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논문 등 관련 증빙자료

- 각종 대회 수상·상훈은 **3점 이내로 한정**
-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하고 논문 표지 및 서론 사본 제출
- 연구실적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⑤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유효기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증명서)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미제출시 인정 불가)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함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함

9. 기타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 기간이 긴 차순위자를 우선 선발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함

○ 시험장소 안내,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험 및 임용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정책관 인사팀(051-888-8334)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